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1-02-국제연대위-02
수 신 : 법무부장관(난민정책과)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류다솔 간사, 02-522-7284)
제 목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전송일자 : 2021. 2. 8.(월)
전송매수 : 총 14매(첨부파일 포함)

1.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는 1990년부터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매커니즘을 활용한 문제제기 및 다양한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귀 부에서 2020. 12. 28. 공고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제2020-407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총 11매)
첨부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1. 2. 8.자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총 2매)

2021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는 귀 부가 2020년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법무부 개정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2.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법무부 장관 귀중

1. 총론

수년 간 국내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심사 절차는 각종다기한 문제를 노정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2020년 6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에게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 운용을 요구하며, 1차 심사 및 난민위원회가 부족한 인력으로 졸속으로 절차가 이행될 여지가 크다는 점, 법무부가 ‘남용가능성’을 이유로 난민심사와 체류에 관한 지침은 비공개하고 난민신청자의 기본권을 무분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출입국항에서부터 비호 권리를 차단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은 출입국항 난민신청 6.9%의 회부율과 0.4%의 난민인정률을 기록하며 제도 운영 사상 최악의 해가 되었고, 2020년의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부터 난민 심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 심사적체 해소TF는 사실상 자의적 기준으로 난민신청을 분류하여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짜난민을 만들어낸 ‘면접조작사건’을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최근에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민심사의 신속성이라는 목표를 이유로 하여 난민인정절차 과정에서의 취약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어, 난민법의 입법취지와 난민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모임은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2021. 2. 8.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별첨 파일 참조). 이하에서는 주요한 개정 내용에 대한 조항 별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적격성 심사제도의 신설 (안 제2조, 제5조의2,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 반대

법무부 개정안은 '재신청자(과거 부적격결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면접조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재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을 협소하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대부분의 재신청 난민들은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재신청 접수가 거부되거나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에 관한 신설안은 재신청자에 대하여는 이미 난민사유가 없는 '남용적 신청자'일 뿐이라는 출입국의 근거없는 추측과 부당한 관점을 법문으로 승격시켜 이들을 신속히 퇴거시키기 위한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적격여부 심사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입법례도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회부율은 높은 것(예: 캐나다 약 90%)을 보면, 난민사유(혹은 재신청사유)가 명백히 없는 일부의 신청자들을 걸러낼 취지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난민인정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2019년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한 실정에서 위 개정안의 도입은 재신청자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면접조사 기회도 박탈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부적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부적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동조 제1항 각 호의 단서의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난민인정심사가 필요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등 부적격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상의 행정청의 관행으로 보아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는 용어(“중대한”, “소명”)로 규정되어 있어, 부당하게 협소하게 운용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3.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기재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신설하여 체류 및 이의신청 기간 제한 (안 제18조의2, 제21조 제8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반대

법무부 개정안은 "체류 연장 목적",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난민신청에 대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으로 인한 불인정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을 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난민 인정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엄격한 심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난민들은 구제 받기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은 ‘명백히 사기적인 난민신청(Clearly Fraudulent)’인 경우 또는 ‘난민협약상 사유가 명백히 아닌 경우’로 제한되고, 그 경우에도 일정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난민신청이 ‘명백히 사기적’이기 위해서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넘어선 사기적인 행위(fraudulent)가 개입되어야 하며, 고의로 심사관을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법무부 개정안에서 예시하는 “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은 “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을 난민협약 상의 난민인정 사유가

명백히 아니라는 사실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난민신청자의 구체적인 사정 - 난민심사가 종료될까지 “체류 연장”을 기대하는 등 - 을 무시하고,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어려움”도 다른 사실관계와 종합하여 난민협약 상의 박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박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개정입니다. 나아가, 난민협약 상 박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고문방지협약 및 자유권규약에 근거한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만연히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으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한 강제송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 개정안 조항은 “오로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엄격한 심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상의 사유가 있는 자의 난민신청도 난민 지위가 불인정될 위험이 상존하고, 법 개정에 따라 이제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어, 이의신청 단계에서 실질적인 재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난민협약 또는 고문방지협약 등의 박해 사유가 있는 신청자로서는, 강제송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서 불인정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심사절차의 지연을 야기하여 애초의 개정 취지인 <신속한 절차 진행>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4. 난민신청 철회간주 신설 (안 제19조의2): 반대

법무부 개정안은 '재입국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및 '난민심사 면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난민신청 철회를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사가 종료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악용의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철회간주가 되려면 실제로 명백하게 본인이 ‘난민신청의 의사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신설조항은 이런 객관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심사가 종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2 제1호의 경우 현재 난민신청자의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고 심사기간 동안의 체류를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데, 이 조항을 보면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앞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이 무엇이 될지 매우 불분명하고 정당하게 재입국허가를 거부할 사유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체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난민신청자는 충분히 적법한 체류기간 내에 제3국 여행 등 적법한 ‘이동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출국’을 할 수 있는데, 난민신청자의 ‘출국’ 사실 자체만으로 난민신청자의 심사를 종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제3호의 경우 현재 정상적인 난민면접조사를 위한 통보방안이 송달에 준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본인에게 심지어 문자로 통보되거나, 체류자격을 주지 않아 ID가 없어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 출입국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본인에게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는 경우, 빈번한 이사 또는 불안정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미 심사를 종료해버린 이후 과연 이와 같은 것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절차 해태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게 매우 힘겨운 사법적 쟁송을 기대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난민신청 장소 제한 (안 제5조제1항): 반대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신청서 접수 장소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국 사무소(예를 들어, 거점 사무소)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난민신청 접수 장소의 제한이 없음에도 이미 관행적으로는 관할 출입국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관할 출입국에서는 거점사무소로 가서 난민신청을 하라며 법률상 근거 없는 접수거부가 이뤄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의 취지를 선해하여 난민심사에 따른 인력집중 및 심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난민신청접수 자체는 모든 출입국 사무소에서 접수는 받되, 난민면접 등 실질적인 심사절차는 거점사무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 등도 행정관서 간 이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6. 난민면접 녹음 복사 제한 (안 제16조): 반대

형사사건에서도 본인의 진술, 본인 진술 기재서류,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사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영상녹화물의 등사가 이뤄져야 하나 귀부는 실무적으로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고 있다가 아예 개정안에 면접녹화물 등사불가를 추가한 것입니다. 소위 “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으로 수천 건의 난민면접 재심사가 이뤄져 난민면접조서의 신빙성을 완벽히 신뢰하기 어려운데 모든 사법적 불복절차도 난민면접조서만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민들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어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더욱 면접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높습니다. 난민면접 녹음파일의 경우, 난민면접의

허위 통역 또는 허위 기재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와, 진술이 축약된 면접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인 조서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열람만 가능하다면 진술을 바탕으로 주장을 정리,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능한 난민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법 제12조)도 심각히 침해되는 것입니다.

7. 위조문서 제출의 처벌 강화 (안 제47조): 반대

난민인정절차에서 과도한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관행과 맞물려,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에 관하여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난민심사 과정에서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서의 위변조 여부, 허위사실 기재 여부에 관한 수사 개시가 용이해지면서 난민신청자들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위축되고,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서류의 제출을 꺼리면서 한국의 증거제출요구 경향과 맞물려 난민인정심사의 부정확성, 불확실성 및 낮은 인정률의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위조문서 제출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자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선의로 난민인정절차에 조력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실제 위조 여부를 지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난민인정절차를 조력하는 특성상 조력자의 역할 역시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단지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공무원의 ‘충분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허위의 자료임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의 심사 해태에 관한 책임을 난민신청자에게 가혹하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위서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난민법 10조 사실조사 규정을 이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신문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 조사에 관한 규정에 비하여도 피의자(용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조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 조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난민신청자 혹은 외국인인 알선·권유 용의자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같은 형사절차상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행정조사 결과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 등을 받아 인신 구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많은 난민신청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허위 문서를 이용하거나 이민국의 통제를 벗어나 타국에 들어가게 되며, 허위 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진술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NHCR, Beyond Proof: Credibility Assessment in EU Asylum Systems). 신청자가 행한 진실과 다른 진술은 난민지위를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러한 진술을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 평가하는 것은 심사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UNHCR,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타인여권을 빌려 그 타인의 명의로 입국하고 난민인정신청까지 한 사건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를 고려할 때, 난민 상당수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을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위조, 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임이 확인된 경우 이를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난민심사의 충실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전체적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8. 난민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안 제25조, 제26조): 보완 필요

난민위원회는 그동안 실무적, 구조적으로 법무부에 종속된 지위, 과중한 업무부담, 이의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였고, 개정안도 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 핵심은 독립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인데, 이를 위해서는 1차 심사 기관과의 분리가 필수적이며, 위원의 상임화와 심의구조의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난민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권고를 준용하여 별도의 난민위원회법과 같은 조직법을 근거로 완전한 독립을 꾀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출신의 위원을 제한하고 위원 수 구성을 공무원의 비율보다 민간인의 비율이 높게 운영할 것,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보할 것 등의 보완으로 운영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편 「난민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

무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이 상위 법령에 대한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9. 부칙 제3조 (안 부칙 제2조, 제3조): 반대

이 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리한 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고, 특히 부적격결정의 경우 14일의 제한을 잠탈하여, 6개월까지 언제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절차지연의 책임을 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어서 더욱 부당합니다.



문서번호 : 21-02-사무-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전송일자 : 2021. 02. 08.(월)

전송매수 : 총 2매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난민법이 시행된지 7년 반만에 처음으로 법무부가 대대적인 난민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 자찬하며,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난민법은 미흡한 난민인정심사제도로 인한 극도로 낮은 난민인정률, 공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의신청 제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난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보는 시각, 난민을 보호의 관점이 아닌 더 신속하게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관점만이 드러난다.

개정안은 난민협약 등 국제법과 국제기준이 보장하는 난민의 권리를 명확히 침해한다. 법안의 핵심인 부적격 심사 제도의 도입 및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관련 조항이 특히 그렇다. 개정안은 부적격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재신청한 난민 등은 면접심사 없이 서류로만 심사하여 원칙적으로 기각하겠다고 한다. 2019년 난민인정률이 0.4%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개정안대로라면 99%의 난민신청자들은 이유없는 난민신청자로 낙인찍힌다. 현재 한국의 난민인정심사제도에서 난민들은 우연히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대부분 1차심사에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하루에 1,000여 건을 서류심사하는 난민위원회는 온전한 구제절차로 기능할 수 없으며, 난민 소송은 대부분 본인소송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의 정황정보와 박해 사유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사부터 소송까지 난민이 난민으로 확인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심사제도의 개선 없이 적격성 심사가 도입된다면 재신청자 등은 부적격 결정을 통해 면접조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이다. 2019년 전

세계 난민인정률은 약 35%, 유럽의 난민인정률은 약 33%였다.

개정안은 또한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결정을 하면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불인정 결정 대상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의 예로 "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고 있다. 물론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면 불인정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난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정안이 제시하는 대로 체류 연장 목적, 사인간의 분쟁,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의 난민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고 낙인찍는 것은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반한다. 사인간의 분쟁이라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난민협약 상 난민이 될 수 있으며, 난민협약 외에도 한국이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등에 근거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인정심사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사안은 이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위험이 있는지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박해의 사유와 위험에 대해 판단할 심사 역량과 체계적인 정보수집 능력이 없다 보니 난민신청자 개인의 사정과 체류 목적만을 의심한다. 개정안은 현재까지 법무부가 자행해온,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을 법에 근거를 두어 승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심사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모든 결정을 공정하고, 오롯이 보호적 필요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난민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법무부의 절차 지연과 미흡한 심사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난민에게 돌려 그나마 법이 보장하고 있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